

[사 건 명] 행심 2017 - 20

##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5.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봉사 6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 가. 2017. 5. 8. 청구인은 같은 반 ㉠㉠㉠에 손목시계를 빌려주었고, 그 시계를 다시 2학년 1반 ◇◇◇이 빌려가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돌려주지 않아 말다툼이 있었다.
- 나. 이후 하교 중에 청구인과 ◇◇◇이 교내서 싸우다 학교 앞으로 나가 다시 싸웠고 외부인이 이를 보고 학교로 신고하여 이들을 학교로 데리고 와서 청구인 및 주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측의 진술내용에 차이가 있다.
- 다. 2017. 5. 11. 학교폭력전담회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회부되었다.
- 라. 2017. 5.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교내봉

사 6시간 및 학생 특별교육 3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 처분조치 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처음부터 물리적인 충돌을 원치 않았으며 ◇◇◇이 시계를 돌려준다는 약속을 여러 번 어겨 다툼이 발생하였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 먼저 청구인의 목살을 잡고 흔들며 턱과 목 등을 가격하여 물리적인 싸움을 야기시켰다.
- 나. ◇◇◇이 청구인에게 먼저 싸움을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을 숨기려고 얼굴을 3~4대 먼저 맞았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임에도 진술의 사실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 조치하였다.
- 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당시 배석했던 경찰관이 사건 가해자인 ●●측과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2017. 05. 08.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청구인이 ◇◇◇ 학생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담임교사에게 본인이 먼저 때렸다고 상담을 하였고 본인

이 먼저 때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였다.

다. 청구인은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 주장하나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청구인의 친구이기도 한 사이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2. 인정사실

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해자 ◇◇◇과 욕설 등을 주고받고, 상호 주먹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얼굴 및 신체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싸움을 하였던 사실들이 인정된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의 피해자 ◇◇◇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얼굴 및 신체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학교 내 봉사과 특별교육이수를 통해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절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